

광주광역시서구자원봉사센터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광주광역시서구각종위원회구성과운영등에관한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구의회 의원을 위원 위촉대상에서 제외하고, 구성인원 조정 및 위원자격을 완화하여 위원회를 원활하게 운영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자원봉사센터운영위원회 구성 인원을 9명에서 7명으로(안 제4조제3항)
 - ⇒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서구각종위원회구성과운영등에관한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맞도록 함(안 제4조제4항)
 - ⇒ 위원회는 관계 공무원 2명, 자원봉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 5명으로 구성하며 구청장이 위촉한다.

3. 검토의견

이번 개정안은 서구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있어 광주광역시서구각종위원회구성과운영등에관한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과 상이한 규정을 정비하고 위원자격을 완화하여 위원회를 원활하게 운영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서구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조례 제4조제4항에서는 “위원회는 관계 공무원 2명, 구의회 의원 2명, 자원봉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을 가진 학자나 민간단체 대표 등을 포함한 민간인 5명으로 구성하며 구청장이 위촉한다. 단 구의회 의원은 구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하여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특별조례인 광주광역시서구각종위원회구성과운영등에관한조례 제3조제1항에서는 서구의회 의원을 위원 위촉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서구각종위원회구성과운영등에관한조례

제3조(위원회구성 등) ①위원회 위원은 광주광역시서구의회 의원을 제외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하고, 전문가를 위촉할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관계 공무원의 수는 위원회 위원 정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서구의회 의원을 위원 위촉대상에서 제외토록 한 광주광역시서구각종위원회구성과운영등에관한조례 제3조제1항에 의거 구의회 의원 2명을 위원 위촉대상에서 제외하고 이를 감안하여 위원회 구성을 9명에서 7명으로 하자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